「구미시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Ⅰ. 심사경과

1. **제출일자**: 2026년 10월 6일
2. **제 출 자**: 구미시장
3. **회부일자**: 2026년 10월 7일
4. **상정일자**: 2026년 10월 14일
 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Ⅱ. 제안 설명의 요지

1. 제안 설명자: 미래교육돌봄국장 정 창 호

2. 제안이유

○ 구미시장학재단이 장학사업과 지역특화 교육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교육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목적, 적용범위 및 설립에 관한 사항(안 제1조～제3조)
나. 사업 및 재산의 조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제5조)
다. 임원 및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, 제7조)
라.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마.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에 관한 사항(안 제9조, 제10조)
바.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, 제12조)
사. 공무원의 파견, 잔여재산의 귀속 및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～제1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민법」,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합　　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
Ⅲ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창 곤

○ 본 조례안은

- 기존 장학재단을 특화교육 전담기구로 개편하고, 장학사업과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·연계하여 지역인재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와 운영체계 정비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장학사업에 교육정책 연구·개발과 진학·진로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지원 체계를 마련하고, 재단의 전문성과 사업 수행 역량을 높이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 다만, 재단의 명칭과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허가 및 등기변경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, 확대되는 사업에 맞춰 조직과 인력 운영계획 및 소요예산의 구체화가 필요함.

- 아울러 기존 장학사업과 새롭게 추진하는 교육지원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재단의 역할 확대가 지역인재 육성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　　략

Ⅴ. 토　론　요　지: 없　　음

Ⅵ. 소수의견의 요지: 없　　음

Ⅶ. 심　사　결　과: 원안가결